

#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0. 2. 24		16	2021.3.29	
2	2011. 9. 1		17	2021.9.6	
3	2012. 2. 27		18	2022.8.10	
4	2013. 4. 22		19	2023.12.18	
5	2014. 4. 22		20	2024. 2. 26	
6	2015. 2. 27		21	2024. 7. 29	
7	2015. 10. 28		22		
8	2016. 3. 1		23		
9	2016. 10. 28		24		
10	2017. 3. 1		25		
11	2017. 6. 19		26		
12	2018. 3. 1		27		
13	2019. 3. 6		28		
14	2019.08.26		29		
15	2020. 3. 9		30		

##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규정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장학금의 종류)**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<별표 1>과 같다.<개정 2009.1.20>

① ~ ② 삭제 <2009.1.20>

**제3조 (선정기준)** 장학생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.

1. 재능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를 우선한다.
2. 경제사정이 동일할 경우 학업성적,品行, 자질 등의 순으로 한다.
3. 학부(과) 및 학년을 감안하여 인원을 배정한다.

**제4조 (신청기간 및 제출서류)** 은익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북한귀순동포 장학금, 향대장학금 및 기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09.1.20>

1. 신청기간

가. 은익, 국가유공자, 북한귀순동포, 향대장학금 등 신청 장학금의 경우는 매 학기 공지된 기간 내에 신청한다.<개정 2016.10.28>

나. 삭제<2016.10.28>

2. 제출서류

가. 은익장학금 : 은익A 및 은익B 장학은 국가장학금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은익C 장학은 학부(과)장 추천서와 파산증명서, 압류증명서, 자연재해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<개정 2013.4.22.>

나. 국가유공자장학금 : 해당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서 1부를 제 1호의 기간 내에 학생처로 제출한다.

다. 북한귀순동포 장학금 :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각 1부를 제1호의 기간 내에 학생처로 제출한다.

라. 향대 장학금 : 재학증명서 각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 1호의 기간 내에 학생처로 제출한다.

마. 기타 학비 보조금 :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가정형편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1호의 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만 각종 장학의 우선 수혜자가 될 수 있다.

**제5조 (선정절차)** 장학생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학생처장은 인원을 배정하여 각 학부(과)장과 관계부서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한다.
2. 장학위원회는 추천된 장학생 대상자를 심의 선정한다. 단, 장학금 지급시기를

감안하여 추천된 장학생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장학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생략하고 학생처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 선정한다.

**제6조** (장학생 명부) 학생처는 장학금이 지급되면 개인별 장학금 지급 내역을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한다. <개정 2016.10.28., 2023.12.18.>

**제7조** (지급결과 보고) 학생처는 장학금 지급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16.10.28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11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2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3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4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<별표>의 성적기준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15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개정된 세칙 시행일 이전에 선발된 학생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.
16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7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단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8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단 201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9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단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0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1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,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2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3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24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5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26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27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,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28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9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- 30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31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32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33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34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35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신설 2009.1.20.> <개정 2010.2.24, 2011.9.1, 2012.2.27, 2013.4.22, 2014.4.22., 2015.2.27, 2015.10., 2016.3.1, 2016.10.28, 2017.3.1, 2017.6.19, 2018.3.1, 2019.3.6, 2019.8.26., 2021.3.29., 2021.9.6., 2022.8.10., 2023.12.18., 2024.2.26, 2024.7.29>

**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**

구분	장 학 명	장학금 지급내용	성적기준	
성적우수 장학	신입생	수능최우수 장학금	· 수학능력시험 성적 최고득점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	평점평균이 3.50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자격 상실
		한진그룹 장학금	· 학부(과) 별 수학능력시험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(학부(과)수석장학)	-
		정석장학금	· 정석B : 입학전형 별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-
		외국인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	· 입학 시“순수외국인장학추천위원회”가 한국어 성적 우수자 및 영어 성적 우수자로 추천한 외국인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▪ 한국어 성적 우수자 장학금 (Korean track 대상) - 토픽 6급 : 등록금의 100% - 토픽 5급 : 등록금의 50% - 토픽 4급 : 등록금의 30% ▪ 영어 성적 우수자 장학금 (English track 대상) - IBT 96 0상 또는 IELTS 7.0 0상 : 등록금의 100% - IBT 90 0상 또는 IELTS 6.5 0상 : 등록금의 50% - IBT 81 0상 또는 IELTS 6.0 0상 : 등록금의 20% · 본교 한국어교육원을 수료하고 한국어 교육원에서 추천한 외국인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- 등록금의 50% 이내 · 외국인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“순수외국인장학추천위원회”에서 심의, 추천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- 등록금 30만원(등록금 범위내 중복 지급 가능) · 교육부(국립국제교육원)가 선발하는“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”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· 총장이 승인한 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- 협정 내용에 따름	-
	재학생	전체수석 장학금	· 신입학 시 수능최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	평점평균이 3.50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자격 상실
		한진그룹 장학금	· 학부(과) 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(학부(과)수석 장학)	직전학기 평점평균 3.80 이상
		정석장학금	· 정석A(학부(과)차석 장학) : 학부(과)별 성적 차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· 정석C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(보라호장학, T&J장학 포함) · 정석D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직전학기 평점 평균 3.50 이상
		연계/융합 및 특성화 전공 장학금	· 대학에서 지정한 연계/융합전공 및 특성화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	직전학기 평균 평점 3.50이상
		외국인 학생 성적우수 장학금	· 순수 외국인(부모, 본인 모두 외국 국적 소지자)에게 지급하는 장학 -4.30이상: 등록금 전액 -4.00이상: 등록금의 60% 감면 -3.50이상: 등록금의 50% 감면 -3.00이상: 등록금의 30% 감면 -2.50이상: 등록금의 20% 감면	-

구분		장 학 명	장학금 지급내용	성적기준
가계곤란 장학	신입생 재학생 공통	은익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은익A : 학자금 지원구간 0구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(한국장학재단 자료 기준)</li> <li>· 은익B :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~8구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단, 학자금 지원구간의 지원범위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함.</li> <li>· 은익C(학부(과) 추천 장학) : 파산, 사고, 천재지변,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할 경우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지원팀에서 선발 지급하는 장학금 (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</li> </ul>	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적용
		국가유공자 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(본인 및 자녀)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독립유공자((손)자녀)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의 50% 장학금, 본인의 경우 100% (단, 보훈청에서 '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은 자에 한함)</li> </ul>	직전학기 성적 70/100 이상,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기타 장학	신입생 재학생 공통	북한이탈주민 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북한이탈주민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의 50% 장학금(단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대학 수업료 면제대상으로 인정한자에 한함.</li> </ul>	본인의 경우 직전 2개 학기,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/100 이상
		외국인 학생 특별 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</li> <li>-2.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 취득 시 장학생 자격 상실</li> <li>· 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정액(학기당 150만원) 장학금. 단, 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은 우리 대학의 성적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음.</li> <li>-2.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인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</li> <li>· 외국인 재학생 중 재학 기간 내에 토픽시험 차상위 레벨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.</li> <li>·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원 출신 외국인 학생 중 입학 후 첫 학기를 수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</li> </ul>	평점평균 2.75 이상
		군위탁생 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각 군 참모총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협정에 근거하여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</li> </ul>	-

구 분		장 학 명	장학금 지급내용	성적기준
기타 장학	신입생 재학생 공통	교환학생장학금	· 엠브리리들 항공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-
		국제교류학생 장학금	·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-
		해외탐방 장학금	· 해외연수,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대회 등의 참가자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(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)	-
		해외대학 교류 장학금	·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에 1개 학기 이상 파견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 (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)	-
		KAU Challenger 장학금	· 세계의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주고자 본교가 공모한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(팀)에게 지급하는 장학금(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)	-
		봉사 장학금	·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본교 교육정신을 선양한 학생 및 학생자치활동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직전학기 평점 평균 2.25 이상
		교직원 자녀 장학금	· 재직중인 본교 교직원, 정석 인하학원 임직원, 정석인하 학원 산하 각급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일 경우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- 등록금 전액 : 본교 교직원 및 정석인하학원 임직원의 자녀 - 수업료의 3분의 2 : 재단산하 각급학교 교직원의 자녀 · 단, 연봉계약직으로 임용된 교직원(재단 임직원 포함), 연구원, 사무보조원 및 일용직 등은 제외한다. · 해당 교직원 및 임직원이 정년 퇴직, 명예퇴직,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는 당시 재학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	직전학기 평점 평균 2.25 이상
향대 장학금	· 본교에 형제, 자매 등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모두에게 졸업 시 까지 지급하는 장학금	직전학기 평점 평균 2.75 이상		



구 분		장 학 명	장학금 지급내용	성적기준
기타 장학	신입생 재학생 공통	계약학과 장학금	· 본교와 계약학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	-
		국가 고시 장학금	·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는 장학금 - 5급(1차) : 등록금 반액(1회) - 5급(최종) : 등록금 전액 (졸업 시 까지) - 7급(최종) : 150만원	직전학기 성적 2.75 이상
		전문자격시험 장학금	· 국가에서 주관하는 전문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게 합격일 기준 다음 학기에 지급하는 장학금 -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관세사, 법무사, 노무사 : 150만원(1회)	직전학기 성적 2.75 이상
		근로 장학금	· 행정부서, 학부(과) 사무실 또는 부속(부설) 기관 등에서 근로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-
		공로기념 장학금	· 대학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기리기 위해서 공로자 명의로 지급하는 장학금	-
		장애인 복지장학금	· 장애우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(국가로부터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) - 장애 등급 중증(1~3등급) : 등록금 반액 - 장애 등급 경증(4~6등급) : 등록금 1/4	직전학기 성적 2.75 이상
		기타 장학금	·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. 지급기준 및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함.(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)	-
		다문화가족지원 장학금	·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직전학기 성적 2.75 이상

구분	장 학 명	장학금 지급내용	성적기준	
기타 장학	신입생 재학생 공통	특별장학금	·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 (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) ① 우리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학생 ②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특기를 가진 학생 ③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학생 ④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	-
		전문자격시험 준비반 장학금	· 전문자격시험 준비반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	직전학기 성적 3.50 이상
		Premium English 장학금	· Premium English 수강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 (등록금 초과지급 가능)	-
		KAU 전문인재 양성 장학금	· 졸업대상자 중 전체 평균평점 4.0 이상인 학생 또는 창업실적이 우수하여 취·창업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 중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첫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금.(등록금 초과지급 가능)	-
		전명섭 장군 장학금	· 항공운항학과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업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	-
		김학현 장학금	· 항공운항학과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	-
		학생활동 마일리지장학금	· 대학에서 지정한 특강 및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직전학기 성적 2.75 이상
		명예장학금	·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가 해당 장학 이외의 전액 장학금 수혜 또는 기타사유로 '장학포기 사유서'를 제출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장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여하는 장학명칭	-
		홍보도우미 장학금	· 본교 홍보도우미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직전학기 성적 2.25 이상
		생활관 복지 장학금	· 생활관 우수 생활자 또는 가계곤란자 등에 대해 생활관장의 추천에 의해 학기별 지급하는 장학금 * 등록금 초과 지원 가능	-
		소수자지원 장학금	·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학생 중 중위소득 70% 이하인 학생에 대해 생활비성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* 등록금 초과 지원 가능	-
	재학생	SPACE 장학금	· 졸업 인증여건(SPACE 인증) 조기 인증자에 대해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* 등록금 초과 지원 가능	-